



# 「2019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여가 활동 증진 및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2019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을 공고하오니,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25일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가 활동 증진 및 국내관광 활성화

나. 주요내용: 노동자와 서울시가 함께 국내여행상품 온라인몰의 적립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해 여가 상품 구매 및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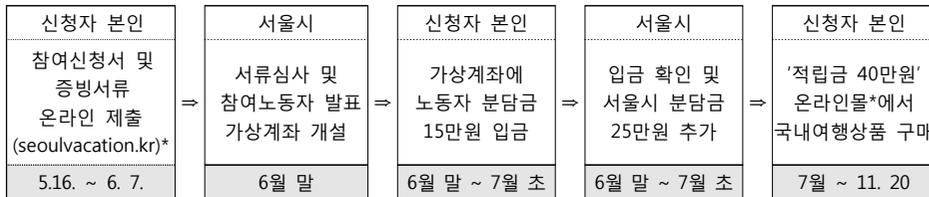
※ 지원 대상: 2,000명 (비정규직 노동자 1,00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00명)

※ 적립금 조성: 총 적립금 40만원 = 참여 노동자 15만원 + 서울시 25만원

※ 적립금 사용: (사용처)사업 전용 온라인몰 (seoulvacation.kr)

(사용기한)2019년 7월초 ~ 2019년 11월 20일

다. 참여절차



\*사업 전용 온라인몰로, 국내여행상품(국내항공, 숙박, 체험/입장권, 여행패키지, 캠핑 등)으로 구성

- 세부내용 홈페이지 seoulvacation.kr 참조

## 2. 신청대상

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동자로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1) 공고일(2019.4.25.) 현재 주민등록초본상 현주소가 서울시인 만 19세 이상 노동자
- 2) 공고일(2019.4.25.) 현재 고용형태가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인 노동자  
(※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고)
- 3) 소득증빙서류상 총 소득금액의 월평균이 200만원 미만인 노동자

※ 단,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선정자는 신청 불가함

나. 자격조건 증빙서류 목록

1. 거주지 및 연령	주민등록초본	
	- 사업 당해 연도 모집공고일(2019.4.25.) 이후 발급된 문서로 거주지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	
2. 고용형태	2-1. 비정규직 노동자	재직증명서 - 사업 당해 연도 모집공고일(2019.4.25.) 이후 발급된 문서로 근로기간 정보가 식별되어야 하며, 모집 공고일이 근로기간에 포함된 서류에 한함 - 비정규직으로 재직증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기존 서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서식 비고란 등에 인사담당자가 비정규직 유무 기재("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및 날인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무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계약일자, 만료일 등 근로기간 정보가 식별되어야 하며, 모집 공고일(2019.4.25.)이 계약 기간에 포함된 서류에 한함
3. 소득증빙	3-1. 근로소득자 (매월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 일용노동자)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발급
	3-2. 사업소득자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노동자)	
	3-3.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2017년도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발급

※ 모든 증명서류는 발급처의 직인이 날인 되어야 함

##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19년 5월 16일(목) 09시 ~ 6월 7일(금) 17시, 총 23일간

나. 신청방법: 노동자 개인 단위 온라인 신청

다. 신청서 제출: 웹사이트(seoulvacation.kr)에서 온라인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라. 신청문의 ※ 현장방문 접수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

- 1) 전화: 다산콜센터 02-120, 서울관광재단 02-3788-8115~6, 이메일: vacation@sto.or.kr
- 2) 서울형 여행바우처 사업 홈페이지(seoulvacation.kr)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4. 선정방법

가. 2019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의 선정인원은 총 2,000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각 부문별로 1,000명씩 선정

나. 전체 신청 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된 경우,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모집을 진행

- 다. 전체 신청 인원이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경우, 경찰관 입회 하에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원대상자와 예비 지원대상자 선발 예정
- 라. 추첨된 지원대상자 중 부적격자가 발생 시, 예비 지원대상자 중에서 추가 선정

### 5. 참고사항

- 가. 온라인 신청서에 기입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나. 선정 후 2주 이내(추가 선정자는 1주 이내), 개별 가상계좌에 노동자 분담금(15만원) 입금 완료한 노동자에 한하여 서울시 분담금을 지원함
- 다. 여행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 (seoulvacation.kr)
- 라. 세부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seoulvacation.kr) 참고

## 붙임 사업 참여 대상 노동자의 고용형태별 정의

### 1) '비정규직 노동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해당 고용형태의 증명을 위해 재단이 규정한 서류의 제출이 가능한 자

###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조항에 규정된 아래 9개 직종의 노동자로, 해당 고용형태의 증명을 위해 재단이 규정한 서류의 제출이 가능한 자

<표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및 각 적용범위

직 종	적 용 범 위
보험설계사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건설기계 자차기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교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전속 퀵서비스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대출모집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전속)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출처: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정의 및 적용범위(<https://www.kcomwel.or.kr/>)